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57983 판결 [보증채무금]

변경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에 의하여 변경

재판경과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57983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2001나481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 담당변호사 문BA외 2인)

【피고,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이BB)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7. 27. 선고 2001나4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관련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대출한 이 사건 약속어음은 모두 상업어음이 아니고 유통어음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서(갑제2호증의 1, 2)의 특약란에,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여신거래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업체간에 당해 업체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된 상업어음(세금계산서가 첨부된 것)의 할인'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그 문언상 보증인의 보증범위가 주채무자의 상업어음의 할인으로 인한 채무만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대출 금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어음할인 대출을 한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니라면, 설령 원고가 과실없이 할인어음을 상업어음으로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출채무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그 대출채무에 관하여는 신용보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0다23952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에 기하여 OO수산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약DA식품에 대하여 어음할인하여 준 이 사건 약속어음들이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보증대상으로 한정된 상업어음이 아닌 이상, 원고가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여신을 제공함에 있어서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으로 인한 대출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의 범위에 관한 약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